서울특별시 마포구의회
제286회 1차 정례회

검 토 보 고 서

2026. 9. 9.(수)

순서	검 토 안 건	제 안
1	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	구청장

행정경제위원회

(전문위원 유준상)

“서울특별시 마포구 문화예술진흥에 관한 조례의 일부개정조례안”

검 토 보 고

(보고자 : 전문위원 유준상)

1. 제출자 및 제출경과

○ 제출자 : 구청장

○ 제안일 : 2026. 8. 21.

○ 회부일 : 2022. 8. 24. (의안번호 : 26-79)

2. 제안이유

○ 상위법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3. 주요내용

○ 상위법령 개정사항을 반영하여 용어 정비(안 제2조)

○ 위원회 약칭 및 인용 조항 정비(안 제8조 및 제15조)

○ 위원회 위촉위원의 연임제한 규정 신설 등(안 제18조)

4. 관계법령

○ 문화예술진흥법 제2조

○ 자치법규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이행 촉구

[감사담당관-2933(2026. 3. 17.)호]

○ 입법예고 ; 2026. 7. 16. ~ 2026. 8. 5. (제출된 의견 없음)

5. 검토보고

1 조례의 개정 취지

○ 본 조례안은 본 조례안은 구청장이 제출하여 행정경제위원회로 회부된 안건으로 상위법의 개정사항 및 국민권익위원회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 사항을 반영하고, 현행 조례의 일부 규정을 정비·보완하고자 하는 것임.

2 주요 개정내용

○ 안 제2조는 조례에서 별도로 규정하고 있던 문화예술 관련 용어의 정의를 삭제하고,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에 따른 정의를 적용하도록 정비함.

○ 안 제8조제1항 및 제15조제1항은 “이하”를 “이하 이 장에서”로 변경하는 등 약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고 조문 표현을 정비함.

○ 안 제18조는 축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 규정을 기존 “연임”에서 “한 차례만 연임”할 수 있도록 제한하고 기존 단서 조항을 삭제함.

○ 부칙 제2조는 개정된 연임 제한 규정으로 인해 기존 위원의 임기 적용에 혼선이 발생하지 않도록 경과조치를 마련함.

3 법적 타당성 검토

○ 안 제2조에서 조례 자체의 정의 규정을 삭제하고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를 직접 인용하도록 한 것은 상위법령과 조례 간 용어의 통일성을 확보하고, 향후 상위법 개정 시 조례와의 불일치 가능성을 줄인다는 점에서 타당한 것으로 판단됨.

현행 「문화예술진흥법」 제2조는 문화예술, 문화산업, 문화시

설 등 관련 용어를 구체적으로 정의하고 있어 이를 조례에서 직접 인용하는 방식은 법령 체계의 통일성과 입법 효율성 측면에서 적절한 것으로 보임.

○ 또한 축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하는 것은 특정 위원의 장기간 재임을 방지하고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에게 위원회 참여 기회를 제공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·객관성 및 전문성을 높이려는 취지로 볼 수 있음.

④ 개정의 필요성 및 기대효과

○ 상위법령과 조례의 정의 규정을 일치시켜 법령 해석상 혼선을 방지할 수 있음.

○ 조문 내 약칭의 적용 범위를 명확히 하여 조례의 명확성과 가독성을 높일 수 있음.

○ 축제심의위원의 연임 횟수를 제한함으로써 장기 연임에 따른 위원회 구성의 고착화를 방지하고 신규 전문가 참여와 위원 구성의 다양성을 확대할 수 있음.

○ 기존 위원에 대한 경과조치를 별도로 마련하여 개정 조례 시행에 따른 위원 임기 및 연임 여부에 대한 혼란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.

6. 종합 검토의견

○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「문화예술진흥법」에 따른 정의 규정을 조례에 직접 적용하도록 하여 상위법령과의 체계적 정합성을 확보하고, 일부 조문의 표현 및 인용관계를 명확히 정비하려는 것으로 개정의 필요성과 타당성이 인정됨.

○ 특히 축제심의위원회 위원의 연임을 한 차례로 제한함으로써 특정 위원의 장기 재임을 방지하고 다양한 전문가의 참여 기회를 확대하여 위원회 운영의 공정성과 객관성을 높이는 데 기여할 것으로 판단됨.

○ 아울러 부칙에서 기존 위원의 연임 여부에 관한 경과조치를 두어 기존 위원의 임기와 개정규정 적용 관계를 명확히 하고 있으므로 제도 시행상의 혼란도 크지 않을 것으로 보임.

○ 따라서 본 개정조례안은 상위법령과의 저촉이나 특별한 법적 문제점은 없는 것으로 판단되며, 상위법령과의 정합성 확보, 조문 체계 정비 및 축제심의위원회의 공정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위해 적정한 개정으로 사료됨.